

정부의 중장기계획 수립
의무 관련 질의분리 1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
입법조사관 김재환
Tel. 788-4575/Fax. 788-4579
E-mail: telfeguy@assembly.go.kr



요 약

질의 요지

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계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 현황을 조사·분석함

(회답일 2016. 11. 22.)

■ 조사·분석 방향

-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계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 현황을 조사·분석함

■ 주 요 내 용

-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현황
 -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중에서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, 「국가재정법」, 「국세기본법」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통계법」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서 정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목 차

1. 정부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근거법률 현황 1

<참고문헌>

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

본 조사회답서는 국회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.
오직 의정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정부 등의 중장기계획 수립의무 근거법을 현황

-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 중 정부,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한 법률 현황은 다음과 같음
-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서는 정부에 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,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, 시·도지사에게 시·도 발전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제4조(지역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발전 5개년계획(이하 "지역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제5조(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.
제7조(시·도 발전계획의 수립) ① 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·도 발전계획(이하 "시·도 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한다.

- 「국가재정법」에서는 정부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,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는 중기사업계획서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국가재정법」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)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(이하 "국가재정운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28조(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)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66조(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) ①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「국세기본법」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국세기본법」

제20조의2(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 등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(이하 이 조에서 "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「국가재정법」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

-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 등에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39조의2(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(이하 "중장기재무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거나 설립 근거 법률에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
2. 그 밖에 자산·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·준정부기관

- 「통계법」에서는 통계청장에게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통계법」

제5조의4(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정부는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고, 그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교육감을 포함하며, 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.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음

「협동조합 기본법」

제11조(협동조합에 관한 정책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<참고 문헌>

기획재정부(www.mosf.go.kr)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



국회입법조사처
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